



개정 환경보전법 주요내용 해설 (연재 I)

정혁진 / 환경청 법무담당관

I. 주요 개정사항

1. 특정야생동·식물

가. 근거조항 : 법 제 9조의 2, 영 제 6조의 2 - 6, 규칙 제 11조 - 제 16조

나. 변동사항

- ①타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야생동·식물 보호규정 신설 (법 제 9조의 2)
- ②환경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특정야생동·식물은 허가없이 포획·채취등을 하지 못함.

다. 적용 대상

○파충류·양서류·곤충류·식물류

2. 환경영향평가

가. 근거조항 : (법 제 5조, 영 제 4조, 규칙 제 7조 - 8조)

나. 변동사항

- ①단간사업도 일정규모 이상은 평가대상에 포함
- ②영향평가대상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조정
- ③영향평가 협의절차 조정

다. 적용대상

①영 제 4조의 2에서 정한 <별표 1 >

3. 방지사설의 설치

가. 근거조항 : 법 제 15조의 2의(1), 규칙 제 22조, 제 23조

나. 변동사항

①방지사설설치외의 방법에 의하여 오염

물질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.

②소량폐수의 외부 위탁처리를 인정함에 따라 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수탁처리제도를 도입하고, 환경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처리케 함.

다. 적용대상

①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 또는 환경청장이 정하는 폐수를 환경청장이 지정·고시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.

4. 방지사설의 설계·시공

가. 근거조항 : 법 제 15조의 2의(2), 규칙 제 21조

나. 변동사항

①일부 또는 경미한 사항의 방지사설의 변경은 방지사설업자외의 자도 설계·시공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적용대상

- ①방지사설에 부대되는 기계·기구류등의 신설·대체 또는 개선
- ②허가당시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의 20%이내의 증설, 대체 또는 개선

5. 자가측정대행제도 개선

가. 근거조항 : 법 제 22조, 법 제 22조의 2, 규칙 제 37조

나. 변동사항

①자가측정대행자의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 업소간 과잉경쟁을 미연에 방지

측정신뢰도를 높이고 업소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측정대행 범위를 정함.

②측정대행자의 측정능력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 (대상시설, 업무 활동구역 또는 항목)를 정함으로써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고 배출업소의 측정이행율을 재고토록 함.

③시설규모, 자가측정대상·항목 및 방법의 차등화 및 자가측정 면제대상 설정.

- 규모별 차등화 < 별표 8 >

규모의 기준을 종전의 평균 폐수 배출량에서 시설용량으로 전환

- 자가측정 면제대상 < 별표 6 >

방지사설면제 사업장 및 공동방지사설

처리 사업장. 단, 유류 사용 열공급시설의 황산화물측정은 유황함유 분석표의 비치로써 같음.

6. 비산분진 규제

가. 근거조항 (법 제 26 조의 2)

나. 신설내용

①환경청장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비산분진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분진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함.

②비산분진 발생억제 시설의 기준에 부적합시 : 개선명령 → 사업중지 (또는 사용중지나 제한)

다. 적용 대상시설

10 의나. 변동사항

종 별	1 일평균 작업시간	개 정 후	
		개 정 전	17 시 간 이 내
1 - 2 종	환경기사 1 급 이상의 분야별 기술자격소지자 각 1 인	○자격 : 환경기사 1 급이 상 ○분야별 자격소지자 각 1 인	○좌 동 ○분야별 자격소지자 각 2 인이상 (이 경우 각 1 인을 제외한 인원은 3 종사업장 관리인으로 대 체 가능)
3 종	환경기사 2 급 이상의 분야별 기술자격소지자 각 1 인	○자격 : 환경기사 2 급이 상 ○분야별 자격소지자 각 1 인 또는 해당분야 기술 자격 복수소지자 1 인	좌 동
4 - 5 종	상기 자격소지자, 전문 대학 (공업계, 보건계) 이상 졸업자 또는 당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자 (특정유해물질 배 출사업장은 3 종 관리인 을 두어야 함)	○자격 : 배출시설 설치허 가를 받은자 또는 피고 용인 중에서 임명하는자 ○분야에 관계없이 1 인	좌 동

①비산분진 발생원 시설

7.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 배출농도의 시험검사 의무화

가. 근거조항 : 법 제 30, 영 제 22조, 규칙 제 45조

나. 변동사항

- ①자동차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에 대하여 배출농도 시험의 실시·절차등을 정함.
- ②자동차 배출가스 장치의 성능이 부적합할때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.
- ③자동차 제작에 있어서의 배출가스 농도 기준을 정함.

다. 적용대상

①자동차 배출가스 농도기준 : 규칙 제 45조 <별표 12 >

8.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 제조, 수입 또는 사용의 규제

가. 근거조항 : 법 제 31조, 영 제 23조, 규칙 제 46조

나. 변동사항

- ①자동차연료용 첨가제의 제조, 수입 또는 사용시에는 신고토록 함.
- ②신고된 첨가제에 대한 심사결과 환경보

전상 또는 국민보건상 위해한때에는 사용을 규제함.

다. 적용대상

①신고대상 자동차 연료용첨가제 : 규칙 제 46조 제 1항 <별표 13 >

9. 합성화학물질의 관리

가. 근거조항 : 법 제 42조의 3, 영 제 28조의 2, 규칙 제 52조

나. 신설내용

- ①합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도록 함.
- ②신고대상 합성화학물질의 범위·심사기준을 정함.
- ③신고된 합성화학물질에 대한 심사결과 환경보건상 또는 국민보건상 위해한때에는 제조·수입을 규제함.

다. 적용대상

①신고대상 합성화학물질
- 영 제 28조의 2 제 1항에서 정한물질

10. 배출시설관리인 자격기준

가. 근거조항 : 법 제 23조, 규칙 제 43조 <별표 12 >

나. 변동사항 (앞페이지표 참조)

다. 적용대상 : 규칙별표 12에 해당하는사업장

II. 일선 환경행정 추진 체제조정

1. 위임권한 조정내역

가. 권한의 분리

	환경지청장 관할	시·도지사 관할	근 거
허 가 권	○공단지역 : 전업소 ○공단의 지역중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	공단의 지역중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를 제외한 전업소	영 제 16조(2)항 및 제 49조 단서조항
지도·단속	○허가권 대상지역 : 전업소 ○공단지역 전업소 ○공단의 지역중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○공단의 지역중 3종이상업소	공단의 지역중 4종 및 5종 배출업소, 단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는 제외	·법 제 24조 ·훈령 (지도·점검에 관한 규정)
행정처분권	○없 음	전 업 소	영 제 49조

나. 보완대책의 강구

1) 환경지청장의 허가권 행사시

①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신청은 소 관 시장·군수에게 하도록 하고 시장

- 군수는 관련 인·허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서를 첨부하여 관할 환경지청장에게 송부(영 제 16 조(2)항)
- ② 환경지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
- 2) 시장·도지사의 행정처분권 행사시 (영 제 49 조의 2)
- ① 환경지청장 지도·단속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·단속 결과등 사업장의 법규위반사실이 판명된 경우 환경지청장은 동 지도·단속내용을 처리기준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 시장·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함. (동 조(1)항)
- ② 시장·도지사가 위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지청장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환경지청장에게 통보토록 함. (동 조(2)항)

2. 환경지청장 지도·단속 대상 사업장

가. 총괄

- 1) 공단내전부(1 - 5 중)
- 2) 공단외
 - ① 대기(1 - 3 중)
 - ② 수질(1 - 3 중)
 - ③ 특정유해물질
 - 대기(1 - 5 중)
 - 수질(1 - 5 중)

나. 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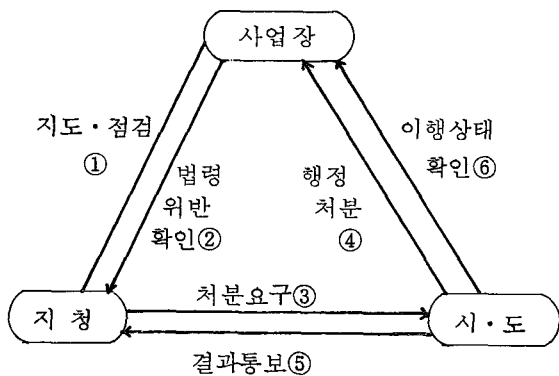
- 1) 다음의 공업단지 또는 지역안의 사업장
 - ① 공업단지관리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업단지
 - ② 공업배치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
 - ③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지개발구역
 - ④ 지방공업개발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구역
 - ⑤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지역
 - ⑥ 도시계획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

- 지정된 공업지역중 다음의 공업지역가) 부산 사상공업지역중 전용공업지역
- 나) 서대구 공업단지
- 다) 대구 제 3 공단
- 2) “가”목의 공업단지 및 지역의의 다음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<대 기 분 야>
- ① 법 제 2 조 제 13 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
- ② 연간 고체연료 사용량 1,000 톤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<수 질 분 야>
- ① 법 제 2 조 제 13 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
- ② 1 일 폐수배출량 500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(폐수 배출량은 시설용량을 말한다.)
- 다.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·점검에 관한 규정 (훈령)
- ① 지도·점검사항
 - 가)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사항과 산업폐기물 관리 사항
 - ② 지도·점검대상 사업장

구 분	환 경 지 청	시 · 도
사업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 별표 5에서 정하는 공업단지의 공단내 전사업장 ○ 부산 사상공업지역중 전용공업지역 ○ 서대구 공업단지 ○ 대구 제 3 공단 ○ 공단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- 3 종이상 사업장 (대기, 수질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지청 관할사업장 외의 사업장

다) 지도·점검의 종류 및 내용

구분 \ 종류	정기 지도·점검	수시 지도·점검
지도·점검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연 2회이상 실시 ○관리상태에 따라 차등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민원발생 ○타기관의 요청 ○비정상 가동 우려 ○기타 필요한 경우
지도·점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 ○자가측정 실시사항 ○배출시설관리인 선임사항 ○산업폐기물 관리상태 ○행정명령 이행사항 ○기타 필요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 ○기타 필요사항



라.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(환경지청관할 사업장)

— 옆 그림 참조

비고 : ③위반사실·처리기준 및 조치의견 첨부

④ 5일 이내 처분

⑥ 부실한 경우 필요한 조치후 지청통보

< 다음호에 계속 >

